

보도자료



	금융위원회		'정용감독원."					
		보도	보도 2018.12.28.(금) 조간		배포	2018.12.27.(목)	♥광감독♥	
	4 11 OL 7 1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이 한 진(02-2100-2620)				주 민 석 (02-2100 이 윤 아 (02-2100)-2623) 주무관	
	책 임 자		감원 신용정보실장 담 당 자 민 수(02-3145-7850)		당 자	김 재 호 팀장 (02-3145-7830)		
			정보원 신용정보부장 현 섭(02-3705-5910)			이 병 ⁻ (02-3705		

제 목: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.

- '18년 마련된 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」의 주요 세부방안이 '19.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.
- ◆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,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.
- ◆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(1~10등급)이 신용점수(1~1000점)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어, 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
- ◆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되어,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.
- ◆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·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,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·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.
- ◆ 정부는 '11.21일 당정협의를 거쳐 **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('12.27일 정무위 상정)**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, **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설치(신용정보원 內)** 등 **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·투명성**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.

①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

- (현황)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·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*으로 하락
 - *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 : 저축은행 1.6등급, 은행 0.25등급(NICE평가정보, '17.3월)
- (개선) 대출금리·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 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
 - 1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·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
 - 우선 '19.1.14일부터 저축은행권(금리 18% 이하* 대상)에 시행 *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
 - 상호금융·여전·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'19.6월중 시행될 계획
 - √ **기대효과** (NICE평가정보, '18.6월말 기준)
 - ◆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(추정)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 - * 특히 **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**은 신용등급으로 **0.4등급**(점수 25점) **상승**하고, 그 중 **12만명**은 신용등급으로 **1등급 상승**
 - ②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·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 ※ '19.1.14일 시행
 - ✓ 기대효과 (NICE평가정보, '18.6월말 기준)
 - ◆ **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**은 신용등급으로 **0.6등급 상승**(점수 21점)하고, 그 중 **11만명**은 신용등급으로 **1등급 상승**
 - ◆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(점수 39점) 상승
- (향후 추진과제)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 확대하는 등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

②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→ 점수제 전환

- ※ [참고1]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
- CB사 → 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만 산출하여 금융소비자·금융회사에 제공
- 금융소비자 → 본인의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점수로 제공 받음
- 금융회사 →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·금리 등의 산정,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설명 등에 CB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사용
- (현황)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(1~10등급) 중심으로 운영 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^{*} 발생
 - * (예)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(600-664점)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됨
- (개선)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
 - ① (1단계) 5개 시중은행(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)에서 '19.1.14일부터 시행
 - 소비자의 대출한도,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(CSS: Credit Scoring System)시 **CB**사의 신용점수를 사용
 -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·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
 - ※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·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'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
 - ② (2단계) 全 금융권에 전면 시행 → CB사의 평가결과 산정, 금융회사·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,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상담 등 全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 ※ '20년중 시행
- (향후 추진과제) 신용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실무 TF 등을 통해 조치 필요사항* 지속 점검

※ [참고2] 점수제 시행에 대비한 조치 필요사항

- (금융회사·CB사) 금융회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SS) 변경 및 대출심사 등에 신용점수를 활용하는 기준을 구체화
- (법령·행정지도 등) '신용등급'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·행정지도·모범규준 등 개정 * (예) 「여전업감독규정」(§24①) →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신용등급 활용
- (정책금융 등) '신용등급'을 활용하는 정책금융 지원 기준,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* (예) 서민금융진흥원의 '바꿔드림론' → 지원대상 자격 심사시 신용등급 활용

③ 금융권 연체(이력)정보의 활용기준 합리화

가.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**※ '19.1.14**일 시행

○ (현황)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·연체기간에 따라 **단기·장기** 연체로 구분하여 **CB사·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**

※ [참고] 단기·장기연체 정보의 공유·활용 기준

- (단기연체) 10만원&5영업일 이상 연체시 **CB사에 등록**되며 **금융권에 공유**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**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**
- (장기연체) 50만원&3개월 이상 연체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사·금융권에 공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
- (개선)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
 - (단기연체^{*}) <u>10만원 & 5영업일</u> 이상 → <u>30만원 & 30일</u> 이상 (장기연체) 50만원 & 3개월 이상 → **100만원** & 3개월 이상
 - * 금융권 **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** 유지하고 **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(이력)** 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
 - √ **기대효과** (NICE평가정보, '18.6월말 기준)
 - ◆ (단기연체)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
 - ◆ (**장기연체**) 약 **6만명**의 신용점수가 **156점 상승**

나.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 ※ '19.1.14일 시행

- (현황)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 ('연체이력')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
- (개선)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
 기간을 3년* → 1년으로 단축
 - * 다만,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(3년)을 유지
 - ✓ 기대효과 (NICE평가정보, '18.6월말 기준)
 - ◆ 약 **149만명**의 신용점수가 **41점 상승**하고, 그 중 **75만명은 신용** 등급으로 **1등급 상승**

④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

- ◆ 이하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에 포함
 - 개인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, 법 개정전이라도 **행정지도(금감원)를 통해 우선 시행**

가. 개인신용평가 관련 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

- (현황) 본인에 대한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, 부정확한 평가 등을 정정할 권리 보장도 제한적*
 - * 현재는 (i) **금융거래가 거절**된 고객에 한하여, (ii)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**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**할 수 있는 **권리만 인정**
- (개선) CB사·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
 - (i) 개인신용평가의 **주요기준,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** 등에 대해 **설명을 요구**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
 - (ii)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도 도입
 - ※ '19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

나.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·통지의무 강화

- (현황) 금융회사는 신용점수·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(예: 연체발생)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가 미흡
- (개선)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·통지의무를 강화
 - (i)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
 - (ii) 연체정보 등을 CB사·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전 관련 정보 (예: 채무금액)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
 - ※ '18.9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중:「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」

[5] CB사의 평가요소 공개 확대 ※ '18.6월부터 시행중

-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·등급 변동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, CB사에 세부 평가요소 등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도 추가토록 함
 - *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(www.credit.co.kr,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)에서 확인 가능 KCB 홈페이지(www.allcredit.co.kr, 신용관리 →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)에서 확인 가능
 - ** (기존) 상환이력정보의 반영비중만을 확인 가능 (개선) 상환이력정보의 세부 평가요소, 영향도, 소비자군별 비중 등 확인 가능

< 기 중	<u> </u>	<u>< 개 선 ></u> * KCB 사례							
평가영역	반영비중	평가	주요 평가요소	일반	장기연체				
상환이력정보	28%	영역 상환 이력 정보	연체 건수 ^{주1)}	고객	경험고객				
* (설명) 채무의 여부 및 그 이			면체 일수 ^{주2)}	**	*				
	1 KL 110—)		연체상환 후 경과 일수 ^{주3)}		*				
			연체 금액 ^{주4)}	V	**				
			연체상환 형태 ^{주5)}	-	_				
			반영비중	24%	55%				
			 주1) ~ 주5) : 상세 설명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▲ : 평가에 긍정적 영향, ▼ : 평가에 부정적 영향 						

2 향후 추진계획

- □ 정부는 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」이 금융권에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
- \square 앞으로,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$^{\circ}$, 지배구조 규제 $^{\circ}$, '개인신용 평가 검증위원회^③,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,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*도 지속해 나가겠음
 - *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('12.27일)
 - ① 성별·학력 등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평가상 차별 금지 등
 - ② 지배구조 변경승인, 임원 자격요건 등에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적용
 - ③ 개인신용평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용정보원 내에 설치되며, CB사의 개인신용 평가에 이용되는 기초정보의 정확성, 평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등 검증

